



제 428국회(임시회)
제 2차 정무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개인영상정보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특례 규정〉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719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정 명 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7
1. 총괄	7
가. 제정안의 입법 배경 및 입법 필요성	7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13
2. 주요 내용 검토	15
가. 목적 및 정의	15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	18
다. 적용의 일부 제외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20
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27
마.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안내판 설치 및 임의 조작 제한 등	37
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등	41
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의 관리 등	47
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설의 운영·관리 등	54
자.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61
차. 영상정보주체등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권	65
카. 손해배상책임 및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72
타. 보칙	75
파. 벌칙등	83
하. 부칙	87
【참고자료1】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해외 법제도 동향	89
【참고자료2】 CCTV 관련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개별 법령 현황	9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상혁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3. 7
3. 회 부 일 : 2025. 3.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국민 생활 곳곳에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드론·로봇·자율주행차 등은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으나,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 규율체계는 미비한 상황임.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위한 영상데이터의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 영상관제시설에 대한 안전성 강화, 다중이용시설 IP카메라 보안인증 의무화 등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모두 규율할 수 없고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나 현재 법령 체계로는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움.

이에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법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신산업 발전을 위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을 마련하

는 한편, 다양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으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민의 기본권과 생활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안 제2조제1항제1호)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이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據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기기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각각 분류하여 정의함.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안 제3조)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처리하여야 함.

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범죄예방 등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군사시설·국가중요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 촬영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운용 등(안 제9조 및 제10조)

영상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영상정보주체가 촬영사실을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당한 권리 침해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의 관리(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관리 방침 마련,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이력관리 및 처리

현황 점검 등을 통해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설의 운영 등(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관제업무 종사자의 자격과 교육 등 관제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사.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당초 촬영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영상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영상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상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고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면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아. 영상정보주체 등의 권리보장 등(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영상정보주체 및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출처 확인, 사본의 발급, 보관, 정정, 처리의 전부·일부 정지 또는 삭제를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법률에 따라 열람 등이 금지·제한되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열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자. 금지행위(안 제27조)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수집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 또는 그로부터 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이용, 훼손, 변경, 위조, 유출하거나 멸실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함.

차. 벌칙(안 제35조)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이용, 훼손, 변경, 위조, 유출하거나 멸실되게 한 자 등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Ⅲ. 검토의견

1. 총괄

가. 제정안의 입법 배경 및 입법 필요성

□ 최근 사회 전반에서 CCTV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외에 스마트폰, 블랙박스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은 영상AI 활용을 통하여 4차산업 핵심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범죄 수사·시설 관리·교통 통제 등의 분야에서 CCTV의 유용성이 입증되면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이 2013년 약 57만대에서 2024년 약 195만대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12% 증가하였고¹⁾, 민간 분야에서도 2024년도 기준 표집 대상인 509만개 민간사업자 평균 4대의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총 운영대수가 최근 10년간 연평균 9.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²⁾.

○ 또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차량 블랙박스,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 IoT 등 새로운 IT 기기의 출현과 유튜브, 페이

1) 공공분야의 경우 2012년부터 매년 전수조사 실시중

2)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24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

스북 등 1인 미디어의 확대 등으로 인해 개인영상정보의 수집·활용이 생활 전반에 일상화되고 있음.

□ 그런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이 증가하고 CCTV의 지능화, 스마트폰 및 스마트 가전의 발전,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기기·서비스가 출현하는 등 영상정보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무분별한 영상 촬영이 이루어지고, 촬영된 영상을 유튜브·SNS 등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영상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2024년 12월 기준, 85개의 개별 법령³⁾에서 CCTV 관련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나 주로 특정 장소에서의 설치 의무만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에는 한계가 있고, 공공·민간 부문의 CCTV 활용 증가로 대규모 영상관제시설의 설치 확산 추세에 있으나, 민간 분야 관제센터 운영의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⁴⁾ 관제요원의 자격·관리감독 체계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한 규율 역시 미비한 상황임.

○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상 개인영상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차별적으로 촬영되는 경우가 많아 정보주체가 촬영

3) 법률 29개, 시행령 22개, 부령 34개

4)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 예방 목적으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근거는 최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2025. 1. 7. 개정)을 통해 마련된 바 있음.

영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반면, 개인 식별성 및 사생활 침해 우려는 높아 일반 개인정보와는 다른 독립된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외에도 개인의 권리행사 방법, 안전조치 등 개별법령이 준용할 수 있는 일반법적 영상정보주체 권리 보호체계와 대규모 영상관제시설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⁵⁾하려는 것으로, 영상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독립적 규율체계 확립을 통하여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공백을 해소하고 영상정보 관련 신기술·신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합리적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안전한 활용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2023년 9월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19234호)⁶⁾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외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에 따라 현행 법체계만으로도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가능하고,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개인영상정보’를 별도로 분법하여 규율하는 경우 향후 두 법률의 개정에 따라 다른 법체계를 구성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5)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CCTV관제센터의 법적근거 마련 및 안전성 강화 필요”에 대하여 권고한 바 있음.

6) 2023. 3. 14. 공포 → 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내용은 2023. 9. 16. 시행(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 일부 내용은 시행일 상이)

영상정보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입법경제적인 측면과 법체계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023년 9월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중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뿐만 아니라 고정형-이동형으로 구분하여 세분화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 일부 확대
 - *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 공개된 장소 등에서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개인 영상정보를 촬영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정보주체가 불빛·소리·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의를 밝히지 않은 경우 등 구체적인 촬영 허용기준을 제시

□ 참고로, 제정안과 관련하여 **보호위원회**는 다양한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기기가 국민생활 및 산업 전반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영상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독립된 개별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고, 다만 분법 시 법률간 정합성 확보 및 수범자 혼란 최소화를 위해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과 중복될 수 있는 내용을 삭제 또는 준용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영상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내용만을 최소화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편 **한국방송협회**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상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2023년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위한 별도의 규제체계를 신설하는 등 규제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개선한 점, 2024년 10월 보호위원회가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기준」을 발표하는 등 이미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발전 간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미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독립된 법률의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또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제정안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과 중복되는 조항이 많고 이미 보호위원회에서 영상정보처리기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있으며, 관제시설 운영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과 분리되어야 할 만큼 독립적인 법적 영역인지 불명확하고, 영상정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나 딥보이스 등 음성 기반 기술에 대한 규율에도 한계가 존재하므로, 법 체계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실익이 분명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개인영상정보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EU, 영국, 독일, 미국, 일본은 훈령·조례의 방식으로, 스웨덴·벨기

에·호주는 별도 법률의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⁷⁾.

□ 참고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제19대국회부터 제21대국회까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또는 별도 법률 제정의 방식으로 제출된 바 있으며, 제21대국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율 관련 내용이 일부개정의 방식으로 일부 반영되었음⁸⁾.

7) 상세자료는 [참고자료1] 참조.

8) 개인영상정보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2013년 이후)

구분	발의일자	대표발의	주요 내용
제19대 국회 (2012. 6.~2016.5)	2013. 12. 6.	강기윤 의원	별도법 제정 (공공기관의 영상기기 관리 등)
	2013. 3. 11.	정청래 의원	보호법 개정(CCTV 설치 안내 강화)
	2014. 9. 25.	부좌현 의원	보호법 개정(차량 블랙박스 등 이동형 기기 추가)
	2015. 10. 21.	이개호 의원	보호법 개정(CCTV 임의조작시 처벌 강화)
제20대 국회 (2016. 6.~2020. 5)	2017. 7. 28.	박완수 의원	보호법 개정(CCTV 성능 확보 의무화)
	2017. 12. 14.	민경욱 의원	보호법 개정(드론 등 이동형 기기 추가)
	2017. 12. 22.	정부	별도법 제정 (영상정보 관련 종합 규율체계 마련)
	2019. 8. 14.	백혜련 의원	보호법 개정(지자체 CCTV 관제센터 법적근거)
	2019. 1. 9.	송갑석 의원	보호법 개정(드론 등 이동형 기기 추가)
	2019. 3. 28.	김재원 의원	보호법 개정(드론 등 이동형 기기 추가)
	2019. 5. 3.	최인호 의원	보호법 개정(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영상 활용)
	2019. 6. 13.	정점식 의원	보호법 개정(드론 등 이동형 기기 추가)
제21대 국회 (2020. 6.~2024. 5)	2019. 7. 25.	신창현 의원	보호법 개정(화장실 등에 카메라 설치 금지)
	2020. 7. 1.	송갑석 의원	보호법 개정(드론 등 이동형 기기 추가) *2023. 3. 개정 반영
	2020. 11. 3.	박재호 의원	보호법 개정(지자체 CCTV 관제센터 법적근거)
	2020. 11. 24.	서영교 의원	별도법 제정 (영상정보 관련 종합 규율체계 마련)
	2021. 5. 18.	민병덕 의원	별도법 제정 (영상정보 관련 종합 규율체계 마련)
	2021. 9. 28.	정부	보호법 개정(드론 등 이동형 기기 추가) *2023. 3. 개정 반영
	2022. 8. 30.	김선교 의원	보호법 개정(드론 등 이동형 기기 추가) *2023. 3. 개정 반영
제22대 국회 (2024. 6.~)	2023. 3. 28.	윤주경 의원	별도법 제정 (영상정보 관련 종합 규율체계 마련)
	2024. 9. 20.	이강일 의원	보호법 개정(지자체 CCTV 관제센터 법적근거) *재난관리법 반영
	2025. 3. 7.	박상혁 의원	별도법 제정 (영상정보 관련 종합 규율체계 마련)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 제정안은 총 9개장, 38개조의 본칙과 7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장은 총칙으로 제정안의 목적, 정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과 적용의 일부 제외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제2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을, 제3장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의 관리 등 안전성 확보 조치와 영상정보처리기기 처리 이력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5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설의 운영 등에 관하여, 제6장은 개인영상정보의 이용·제공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장은 영상정보 주체 등의 권리 보장을, 제8장은 보칙을, 제9장은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 부칙은 시행일과 개인영상정보 처리 현황 점검, 관제시설 자체 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으로 구성됨.

□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개인영상정보의 촬영 요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설 운영,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요건,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요구 등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이 있음.

[제정안의 구성 체계]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6장 개인영상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제19조(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2조(정의)		제20조(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제공 제한)
	제3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		제21조(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의무)
	제4조(적용의 일부 제외)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의 설치 등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등)	제7장 영상정보 주체 등의 권리보장	제22조(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요구)
	제7조(안내판의 설치 등)		제23조(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조치 등)
	제8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임의 조작 등 제한)		제24조(열람등의 조치 방법)
			제25조(손해배상책임)
			제26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3장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의 운용 등	제9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운용 등)	제8장 보칙	제27조(금지 행위)
	제10조(촬영 사실의 표시 등)		제28조(비밀유지 등)
			제29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30조(시정조치 등)
			제31조(결과의 공표)
			제32조(연차보고)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 위탁)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장 영상정보 처리기기 및 개인영상 정보의 관리 등	제11조(안전성 확보 조치)	제9장 벌칙	제35조(벌칙)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 · 관리 방침)		제36조(양벌규정)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용 및 관리 사무의 위탁)		제37조(몰수 · 추징 등)
	제14조(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이력관리)		제38조(과태료)
	제15조(개인영상정보의 처리 현황 점검)	부칙	제1조(시행일)
제5장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제시설의 운영 등	제16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제2조(개인영상정보 처리 현황 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관제업무 종사자의 자격 및 교육 등)		제3조(관제시설 자체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공공기관의 관제시설 운영 시 유의사항)		제4조(개인영상정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2. 주요 내용 검토

가. 목적 및 정의

- 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용 및 관리와 이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및 보호 등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영상정보” 등 법률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음(안 제1조 및 제2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용 및 관리와 이에 따른 개인 영상정보의 처리 및 보호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 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 2. “개인영상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영상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살아 있는 개인 또는 그 개인과 관련한 사물을 촬영한 영상 형태의 정보로서 초상, 형태, 행동 등을 통하여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

보

나. 해당 영상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3. “영상정보주체”란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영상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다만, 교통사고의 원인 규명을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부착한 자동차의 소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정안 제1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용 및 관리와 이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및 보호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례를 정한다고 규정하여 제정안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형]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	-착용형: 스마트 안경·시계,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휴대형: 스마트폰,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등 -부착형: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등
촬영된 영상의 저장 및 전송 장치	

□ 제정안 제2조는 개인영상정보과 관련된 핵심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안 제2조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요건을 각 목에서 각각 나열하면서 ‘개인에 관한 영상정보’ 중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개인영상정보”로 정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이 규정할 경우 제정안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 관련 문구가 상당 부분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보다 간결하게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안 제2조제1항제4호 단서는 교통사고의 원인 규명을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부착한 자동차의 소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경우 등을 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인데,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은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미 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바, 해당 내용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

- 제정안은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들을 규정한 것으로, 영상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금지, 목적 외 활용 금지, 훼손·변형 금지 등을 정하고 있음(안 제3조).

제 정 안
제3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영상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를 그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영상정보주체의 행동에 간섭하거나 관찰할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영상정보를 훼손하거나 변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새로운 기술 또는 절차 등을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권리 침해 가능성 또는 그 위험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합리적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 제3조는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원칙을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
- 다만, 개인영상정보는 개인정보의 일종으로서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정안 제3조의 내용 중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 원칙과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는 등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개인(영상)정보 처리 원칙 비교]

구 분	제정안 제3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사생활 침해 금지 등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개인영 상정보를 <u>처리하는 경우 영상정 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 서는 아니 된다.</u>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의 <u>사생활 침해</u> 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야 한다.
목적 외 용도 활용 금지 등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 영상정보를 <u>그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 며, 그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 위를 초과하여 영상정보주체의 행동에 간섭하거나 관찰할 목적 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여 서는 아니 된다.</u>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의 <u>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 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 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훼손·변형 금지 등	③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정당 한 이유 없이 개인영상정보를 <u>훼손하거나 변형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에서 개인정보의 <u>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u>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 고려 등	④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 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새로운 기술 또는 절차 등을 도입하려 는 경우에는 <u>영상정보주체의 권 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 험 정도를 고려</u> 하여야 하며, 필 요한 경우 권리 침해 가능성 또 는 그 위험을 회피하거나 감소 시킬 수 있는 합리적 수단을 마 련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 라 <u>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u> 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다. 적용의 일부 제외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정안 제4조는 국가안전보장 관련 목적의 개인영상정보 촬영 등 법 적용의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이 법이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용·관리 및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보호 등에 관하여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안 제4조 및 제5조).

제 정 안
제4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는 제2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촬영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 영상정보 2.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촬영·이용하는 개인영상정보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자신의 영업장소나 사무소에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용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이용자 또는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영상정보를 매개(媒介)하는 경우에는 제4장, 제6장 및 제7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용·관리 및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보호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보호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용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3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정안 제4조는 이 법의 적용을 일부 제외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안 제4조제1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적용 제외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정 공익적 목적이나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안전보장,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하여는 일부 예외를 인정해주려는 취지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8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3. 삭제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	제4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는 제2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촬영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영상정보 2.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개인정보

- ②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제15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7조제1항·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촬영·이용하는 개인영상정보

-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자신의 영업장소나 사무소에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이용자 또는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영상정보를 매개(媒介)하는 경우에는 제4장, 제6장 및 제7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처리하여야

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하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 한편, 안 제4조제2항은 동창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제9조제1항·제3항(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등),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관리 방침), 제14조(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이력관리) 및 제15조(개인영상정보의 처리 현황 점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⁹⁾.

-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3항은 친목단체의 경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두에 대하여 수집 제한규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과 달리 제정안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고정형과 달리 규율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4조제3항은 소상공인¹⁰⁾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

9) 제정안은 친목단체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 조항에 대한 적용 예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10)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기기를 설치·운용하는 경우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관리 방침), 제14조(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이력관리) 및 제15조(개인 영상정보의 처리 현황 점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하인 소규모 업자가 CCTV 등을 운용할 때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해당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운용·관리 방침 등을 마련하고 처리현황 점검 등을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안 제4조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이용자 또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영상정보”를 매개하는 경우 제4장, 제6장 및 제7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이나 게재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유통만을 단순 매개하는 경우 법적 책임 부과가 곤란한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서비스 이용자 또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영상정보”라고 표현할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자 또는 제공자 스스로가 영상정보주체가 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제3자가 영상정보주체인 개인 영상정보를 서비스 이용자 또는 제공자가 게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한편 제정안 제5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용·관리 및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보호 등에 관하여 이 법이 일반법의 지위에 있음을 규정하고,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되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용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¹¹⁾, 제27조제1항·제2항¹²⁾ 및 제34조¹³⁾를 적용

11)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각 호 생략)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이하 각 호 생략)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⁴⁾.

- 그러나 동 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바,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적용 예외를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법률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5조제2항의 단서 부분은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14)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2항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동법 제15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7조제1항·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고정형뿐만 아니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도 유사한 규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해당 단서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임.

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 제정안은 공개된 장소¹⁵⁾와 그 외 장소(이하 “비공개 장소”라 함)

모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개된 장소 또는 비공개 장소 각각에 경우에 대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예외적인 요건을 정하며, 영상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 촬영 목적 등을 영상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 정 안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용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용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용하는 경우
6.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기록·저장·전송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된 장소는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시설, 공공장소, 도로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장소 외의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이 본인의 사유지에 주거의 안전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적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개

15)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시설, 공공장소, 도로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상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보장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상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설치·촬영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개인영상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⑤ 누구든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공공기관은 제6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해당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거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목적을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또는 공청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허용 사유를 열거하고 있음.

○ 한편 “비공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된 일반적인 조항들이 적용됨.

-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체계와 달리 제정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은 “공개된 장소”와 “비공개 장소” 모두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각각에 대하여 예외적인 허용 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을 취함.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제 비교]

구 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
장소	목적		
공개된 장소	업무	원칙 금지(§25)	원칙 금지(안§6)
	비업무		
비공개 장소	업무	정보주체 동의 등 일반원칙 적용(§15)	
	비업무	허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u>공개된 장소</u>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공개된 장소</u>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기록·저장·전송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u>공개된 장소</u>는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시설, 공공장소, 도로 등 <u>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u>로 한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제2항에 따른 장소 외의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여 개인 영상정보를 촬영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이 본인의 사유지에 주거의 안전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적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영상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u>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보장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u>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상정보주체에게 알
---	---

② 누구든지 <u>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설치·촬영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개인영상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⑤ 누구든지 <u>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⑥ 공공기관은 제6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해당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하거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 목적을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또는 공청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

□ 안 제6조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제정안 제6조제2항은 “공개된 장소”의 범위를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시설, 공공장소, 도로 등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장소”라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¹⁶⁾에서 정한 정의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는 최근 CCTV가 사회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공개된 장소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불특정’ 다수가 출입·이용할 수 있는 장소 외에도, 회사 내 사무공간·공장 내 작업장 등 ‘특정’ 집단 구성원들 다수가 출입·이용할 수 있는 장소 역시 “공개된 장소”의 외연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다음으로, 제정안에 따라 **비공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촬영할 수 있는 요건은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상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요건과 전반적으로 유사함.

○ 그러나 안 제6조제3항제3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와 달리 영상정보주체의 권리와 비교형량 없이도 개인

16)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

11.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보장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이익”의 기준과 내용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영상정보주체의 권익 침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는바 제정안의 내용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촬영 가능 여부가 자의적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다고 보임.

[비공개 장소에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요건 비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정안 제6조제3항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1. 영상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보장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따라서 ‘시설의 안전 확보,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정할 사항의 대강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생각되고, 영상정보주체의 권리와 비교형량 원칙을 추가하는 방안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다음으로, 제정안 제6조제3항 단서는 비공개 장소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이 본인의 ‘사유지’에 주거의 안전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적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이는 홈캠이나 현관문 위 CCTV 설치 등 주거지 내 영유아나 반려견 모니터링, 주거지 침입 등 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허용하려는 취지로 보임.
 - 그러나 ‘사유지’는 개인의 소유권을 전제하는 개념이므로, 이를 전세·월세 등 세입자의 주거지까지 포함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마지막으로, 제정안 제6조제5항은 공개된 장소든 비공개장소든 장소를 불문하고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려는 것으로, 이는 영상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다만, 제정안은 목욕실,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별도의 위임 없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예외가 적용되는 시설들을 포섭하지 못하게 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 단서는 해당 예외가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체계상으로는 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정시설, 정신의료기관 등에 대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나¹⁷⁾,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해당 시설 내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입법방식을 취할 경우 해당 시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안 제6조 단서 부분을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규정과 유사하게 대강의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17) 참고로, 제정안 부칙 제6조에 따르면 제정안 시행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삭제됨.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u>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의 예외)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시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여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⑤ 누구든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해서는 아니 된다. <u>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마.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안내판 설치 및 임의 조작 제한 등

- 제정안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영상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촬영 목적 등이 적시된 안내판 설치 의무 등을 부과하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임의 조작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

제 정 안
제7조(안내판의 설치 등) ① 제6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해당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자는 영상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촬영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제13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의 설치 방법과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임의 조작 등 제한)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그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급박한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한시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정안 제7조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영상정보주체가 촬영사실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군사시설·국가중요시설 등 보안·기밀 유지를 요하는 일부 시설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려는 것임.

○ 이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규정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¹⁸⁾,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영상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임.

□ 제정안 제8조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목적과 다른 임의 조작을 금지하고, 다른 사람 간의 대화 청취 및 녹음을 금지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취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임의 조작 등 제한)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그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18)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급박한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한시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u>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하여서는 아니 된다.</u>
--	--

○ 유사한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급박한 생명·신체의 보호 등 필요성과의 조화를 도모한 긍정적인 취지로 보임.

- 다만, 안 제8조제1항제2호는 급박한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한시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임의 조작을 허용하려는 것인데,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 공개, 파기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한편, 안 제8조제2항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청취·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¹⁹⁾에서는 해당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타인간 대화의 청취·녹음 허용요건을 규정할 수 있는 입법방식을 법률 외에 시행령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자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며, 법 체계상 「통신비밀보호법」과 충돌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됨.

19)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제32조·제35조·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지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3조·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등

- 제정안은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를 허용하는 예외적인 요건들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목욕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개인영상정보 촬영 시 불빛·소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촬영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제 정 안
제9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등)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0조에 따라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영상정보주체가 촬영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운용·촬영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합리적인 범위의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촬영 사실의 표시 등)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제9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제9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용하거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목적을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또는 공청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③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개인영상정보가 촬영될 때 불빛, 소리 등을 통하여 촬영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기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제정안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기기를 의미하며, 오늘날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핸드폰 등 각종 스마트(Smart) 기기, 드론 등이 이동형 영상 촬영기기에 해당함.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달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그 운영 형태(착용형, 휴대형, 부착형 등)나 용도(업무용, 가정용, 취미용 등)가 매우 다양하고, 특히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기기가 지속 출현하고 있고, 촬영 대상과 범위가 수시로 변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 수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국회는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기존 CCTV 중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율체계를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각각으로 이원화된 규율체계로 확대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촬영이 가능하도록 옵트아웃(Opt-out) 방식²⁰⁾의 규제를 적용하였음.
- 이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오히려 국민 편익이 감소하거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비현실적 규제로 인하여 범법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대한 상호 조화와 균형을 도모한 것으로 보임.
- 제정안은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타당한 내용으로 보임.

20) Opt-out 방식이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되, 사후에 정보주체의 거부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중지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와 반대로 Opt-in 방식이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Opt-out 방식이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되, 사후에 정보주체의 거부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중지하는 방식을 의미함.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제 비교]

구 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
장소	목적		
공개된 장소	업무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허용 (§25의2)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허용 (안 §9)
	비업무	허용	
비공개 장소	업무	정보주체 동의 등 일반원칙 적용 (개보법 §15)	
	비업무	허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등)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0조에 따라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영상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운용·촬영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합리적인 범위의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누구든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촬영 사실의 표시 등) ① 개인 영상정보처리자는 제9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9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운용하거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운용 목적을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또는 공청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개인영상
---	--

	정보가 촬영될 때 불빛, 소리 등을 통하여 촬영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기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 다만, 제정안 제9조제2항은 목욕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부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단서에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예외적 촬영 허용요건을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²¹⁾라고 규정함으로써 명확한 목적제한을 전제로 세부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제정안에도 이와 같이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또한 제정안 제10조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경우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촬영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는데, 마약수사·식품단속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한 예외를 두는 방안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1)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의 관리 등

- 제정안은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안전성 확보 조치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관리 방침 마련 의무 부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용 및 관리사무의 위탁,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이력관리 및 처리 현황 점검 등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준수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 정 안
제11조(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네트워크카메라를 설치하려는 경우 반드시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대상 시설과 보안인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관리 방침)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용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설치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2.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운용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중 공공기관이 조사·단속 및 재해·재난 대응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관리 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촬영 목적, 보유 대수, 촬영 장소 및 촬영 범위 3. 개인영상정보의 촬영 및 보유 기간, 보유 장소 및 처리 방법

4.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5. 개인영상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7. 영상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절차 및 방법
 8. 관리책임자 및 담당 부서의 연락처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9.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③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관리 방침의 내용과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와 영상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영상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⑤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관리 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용 및 관리 사무의 위탁)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개인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영상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이력관리)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촬영, 이용, 제공, 공개, 열람, 삭제, 파기, 접속기록 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이력에 대해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력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
2. 이력사항을 위조·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3. 이력사항을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이력관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개인영상정보의 처리 현황 점검) 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용(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시설에서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현황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용 및 관리 현황
2. 개인영상정보의 촬영·보유·이용 및 제공 등 처리 현황
3. 영상정보주체의 열람 등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② 공공기관 외의 개인영상정보처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용하는 자는 매년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현황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고, 제1항제1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 점검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11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6항,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²²⁾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사항

22)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이하 각목 생략)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

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생각됨.

○ 다만, 안 제11조제2항의 경우 “네트워크카메라”에 대한 보안인증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네트워크카메라”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일종인바²³⁾, 해당 개념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보안인증 의무화 조치가 적용되는 수범자의 범위를 영상정보처리자 전체로 할지 또는 일부로 제한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해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설치·운영과 주기적 갱신·점검 조치
 7.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 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참고로, 지난 2024년 11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²⁴⁾ 대책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경우 2023년 3월부터 IP카메라 설치 시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고²⁵⁾, 민간부문도 병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에 설치되는 IP카메라를 대상으로 보안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임²⁶⁾.

○ 이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는 보안인증 외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IP카메라 보안강화를 달성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할 때, 모든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반드시 보안인증 제품을 사용토록 규정하기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보안인증을 다양한 정보보호 방법 중 하나로 명시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24) “안전한 IP카메라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사생활 침해 등 국민 불안 해소 - 관계부처 합동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 발표”, 2024. 11. 14.

25) 국가정보원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보호시스템등의 도입·운영 등에 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새로이 도입·운영하는 정보보호시스템등이 해당 보안대책에 적합한지 검증할 수 있음.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제9조(사이버보안 예방 조치 등) ②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보호시스템, 암호장치, 암호모듈 및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기기(이하 “정보보호시스템등”이라 한다)의 도입·운영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보안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등이 도입·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정보보호시스템등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제2항에 따른 보안대책에 적합한지 검증할 수 있다.

26) 이러한 대책을 반영하여 민간부문의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산업계의 기술수요를 반영한 민간용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2025년 7월 1일부터 ‘TTA 베리파이드(verified)’ 인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서비스 개요) IP카메라 및 NVR(네트워크 비디오 녹화기) 등 기기를 대상으로 총 25개 항목에 걸쳐 사용자 인증, 데이터 보호, 암호화 등 보안성 시험을 진행

□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제8항과 동법 시행령²⁷⁾에서 정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관리 방침과 위탁 관련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내용으로 보임.

□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이력 관리를 의무화하고 관련 금지행위를 명시적으로 정하며,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현황 점검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인영상정보 처리 이력의 무결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생각됨.

○ 다만, 안 제14조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이력 관리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인데, 해당 내용은 안 제11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내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 체계적 측면을 고려하여 조문간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7)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점검 및 이의 확인·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음²⁸⁾.

28)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점검 및 이의 확인·감독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
다. 그 밖에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설의 운영·관리 등

- 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하는 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자체평가 의무와 관제업무 종사자의 자격 및 공공기관의 관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 정 안
제16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하는 시설(이하 “관제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검토한 후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과 촬영 범위, 시간 등에 대한 일부 제한 2.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등의 이행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실시(공공기관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종류와 설치·운용 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내용 등에 따라 영상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권고 받은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체 평가, 제2항에 따른 조치의 권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제출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관제업무 종사자의 자격 및 교육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관제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7.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② 관제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관제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영상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영상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관제시설 내 개인영상정보의 적정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제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기관의 관제시설 운영 시 유의사항) ① 공공기관은 관제시설을 설치하거나 관제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또는 공청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를 거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관제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관리 방침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통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관제대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종류, 설치 목적·위치 및 수량
2.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의 종류와 처리 방법
3. 개인영상정보 처리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관리책임자 및 담당 부서의 연락처
5.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현황
6. 영상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절차 및 방법

- ③ 공공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업무를 다른 공공기관의 관제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업무에 필요한 예산 또는 인력 등을 분담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건·사고 또는 재난 상황의 감지 및 전파, 범죄 피해자 수색 지원 등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관제시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예산 또는 인력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⑤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관제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절차, 관제업무 종사자 교육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설이란 여러 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서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한곳으로 모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
고 관리하는 시설을 의미함.

□ 공공부문의 경우 2024년 12월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216개의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경우 관제시설 현황에 대한 별도의 자료가 집계된 것은 없으나 백화점, 대형병원, 대형마트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수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자체적으로 CCTV를 관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2024년 12월 기준)]

구분	통합관제센터 /시군구 개수	CCTV 관제대수(대)	CCTV 관제인력(명) ^{주1)}	관제센터 운영인력(명) ^{주2)}
서울	25 / 25	114,514	387	109
부산	16 / 16	23,654	282	7
대구	4 / 9	16,694	169	7
인천	11 / 10	26,083	190	7
광주	1 / 5	10,972	82	11
대전	1 / 5	8,907	63	0
울산	5 / 5	13,173	62	7
세종	1 / 1	4,267	25	12
경기	31 / 31	188,071	653	121
강원	18 / 18	22,991	208	15
충북	11 / 11	24,677	176	10
충남	15 / 15	37,836	282	26
전북	14 / 14	22,611	185	16
전남	22 / 22	32,947	413	21
경북	22 / 22	42,011	468	23
경남	18 / 18	45,002	362	22
제주	1 / 2	16,013	86	5
계	216 / 229	650,423	4,093	419

주1) CCTV 관제인력 : CCTV를 직접 관제하는 인력

주2) 관제센터 운영인력 : 관제업무 외 행정업무 처리 및 지원업무 종사 인력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간 다중이용시설 CCTV 운영 사례(2022년말 기준)]

상호명	CCTV 대수(대)	비고
신세계 백화점	8,617대	서울점 3, 수도권점 3, 지방점 6
롯데 백화점	23,774대	서울점 11, 수도권점 9, 지방점 13
갤러리아 백화점	1,887대	서울점 6
현대 백화점	11,647대	서울점 7, 수도권점 4, 지방점 5
서울아산병원	2,165대	
삼성서울병원	2,150대	
연세의료원	2,769대	
이마트	29,918대	138개 점포
롯데마트	13,611대	105개 점포
홈플러스	18,935대	500개 점포
롯데 하이마트	9,585대	437개 점포
용인 에버랜드	1,392대	
롯데월드	610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지난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²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명시적으로 마련된 바 있음.

29) 2025. 7. 1. 시행, 법률 제20030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관제센터는 통합관제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통합관제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개별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연계·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 ④ 통합관제센터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관제시스템의 도입·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민간의 CCTV 활용 증가로 대규모 영상관제시설 운영이 확산 추세에 있으나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관제시설에 대한 근거 외에 여타 공공기관이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관제시설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부재함.
-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선 권고”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 및 범죄 수사 등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당초 수집 외 목적으로 이용·제3자 제공시 기본권 침해가 필요 한도의 범위에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하는 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저장된 방대한 양의 영상정보가 관제시설에 집중·수집·이용될 경우 불특정다수인의 초상권, 자기정보통제권, 사생활 등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 다만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요건으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대비·대응 목적’을 규정한 것과 달리 제정안에서는 통합관제센터의 설

치·운영 목적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데, 명확한 관제 범위
위에 대한 기준이 없을 경우 관제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거나
시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목적
으로 운영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구체
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17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설 종사자의 자
격과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제업무가 개인
의 사생활 및 불특정 다수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점을 고
려할 때 범죄 전력자,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사람이 관제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마지막으로, 안 제18조는 공공기관의 관제시설 운영 시 유의사항
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관제시설 설치 시 의견수렴 절차,
공공기관의 타 공공기관 관제시설에 대한 개인영상정보 처리업무
위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관제시설에 대한 국민 안전
보장 관련 업무 위임·위탁 등을 정함으로써 공공기관 관제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는 조치로 보임.

자.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 제정안은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수집) 요건³⁰⁾과 별개로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요건을 정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의무를 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 정 안
제19조(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u>촬영 목적의 범위</u>에서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당초 촬영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u>에서 <u>영상정보주체에게 부당한 권리침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이 고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u> 2. <u>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명처리 등의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통하여 영상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경우. 이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u>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제공의 목적과 내용, 영상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는 “개인영상정보”,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로 본다. 제21조(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의무)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목적 및 방법의 제한, 파기 기한의 설정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상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제정안 제19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및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개인(영상)정보의 이용·제3자제공 관련 내용 비교]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
수집 목적 범위 내 ³¹⁾	이용·제공 가능(§15①, §17①)	- 영상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용·제공 가능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한 경우로서 영상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경우 이용·제공 가능
추가적 이용·제공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용·제공 가능(§15③, §17④)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영상정보주체에게 부당한 권리침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 경우 이용·제공 가능
수집 목적 범위 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u>정보주체·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u> 이용·제공 가능(§18②)	좌 동

30) 촬영요건은 제정안 제6조(고정형) 및 제9조(이동형)에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제정안 제19조제1항은 기본적으로 개인영상정보의 이용·제공 요건으로 ‘촬영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제공할 것’을 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안 제1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는 “촬영 목적의 범위에서” “당초 촬영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상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영상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당초 촬영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초 촬영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긴 했지만 이와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범위’를 의미하는바, 두 요건은 양립하기 어려운 요건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1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는 “촬영 목적의 범위에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한 경우” 가명처리 등을 통하여 영상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후 영상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영상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개인영상정보의 당초 수집목적 자체가 통계작성, 과학적

31) 개인정보 수집(촬영) 시 이미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것’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수집(촬영)이 가능 → 적법한 수집(촬영) 요건을 충족한 것을 전제로 이용·제공 가능

연구 중인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촬영 목적의 범위 내’일 것을
요건으로 추가할 경우 가명영상정보의 활용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차. 영상정보주체등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권

- 제정안은 영상정보주체등의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 및 조치, 영상정보주체등이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의 권리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 정 안

제22조(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요구) ① 영상정보주체 및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영상정보주체등”이라 한다)는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게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출처 확인, 사본의 발급, 보관, 정정, 처리의 전부·일부 정지 또는 삭제(이하 “열람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을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2.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등 법령 등에 의하여 영상정보주체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행사를 대리하는 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영상정보주체등은 제1항에 따라 열람등을 요구하는 경우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조치 등)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열람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열람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한 열람등의 조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성립되거나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열람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등의 요구를 한 자가 영상정보주체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제22조제3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

주체등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하여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즉시 열람등을 요구하는 등 제22조제3항에 따른 방법과 절차를 따르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열람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열람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영상정보주체등에게 열람등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주체등에게 열람등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등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열람등의 요구가 영상정보주체등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거나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영상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영상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⑥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열람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제4항에 따라 열람등을 연기하거나 제5항에 따라 열람등을 제한·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지체 없이 영상정보주체등에게 알려야 한다.

⑦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주체등이 열람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및 열람등의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 제기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영상정보주체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거나 안내하여야 한다.

⑧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열람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에서 영상정보주체등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열람등의 연기, 제한, 거절 및 조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열람등의 조치 방법)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제23조에 따른 열람등의 조치 중 열람 및 사본의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열람등을 요구한 자 외의 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열람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제적 여건 등의 이유로 기술적 조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열람을 요구한 목적에 비추어 기술적 조치가 부적절한 경우
 3. 그 밖에 기술적 조치를 할 필요가 없거나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주체등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열람등의 조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22조 및 제23조는 영상정보주체등의 열람등 요구권 행사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음³²⁾.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 열람 후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 가능(법 제35조 및 제36조)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 가능(법 제37조)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의 요구> 영상정보주체 및 <u>개인영상정보에 대한</u> <u>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u> 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출처 확인, 사본의 발급, 보관, 처리의 전부·일부 정지 또는 삭제를 요구 가능(안 제22조)
<개인정보의 열람 조치> ①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조치> ① 개인영상정보주체등의 열람등 요구가

32) 2023년 3월 개정(2023년 9월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요구 외에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전송 요구의 요건 등을 규정함(제35조의2 신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열람하도록 하여야 함(법 제35조제3항) ②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법 제35조제4항)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열람등 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23조) ②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안 제19조)
--	--

□ 다만 현행법은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정보주체’만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정정 또는 삭제 및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예를 들어 물품 분실자, 주차 중 파손된 차량의 소유주 등 본인과 관련된 사람이나 물건 등이 영상정보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영상정보를 열람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임에도 정보주체가 아닌 자는 영상정보 열람 등이 불가하여 국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제정안은 영상정보주체 및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촬영을 통해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특성상 영상정보주체 본인 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주체 외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 다만, 안 제22조제2항에서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을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란 행정쟁송법상 원고적격 판단기준³³⁾이 되는 추상적 개념일 뿐,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는 경우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3조는 열람등 요구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간 내 조치 의무, 요구자가 영상정보주체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의무, 요구절차 생략 사유, 열람등 제한·거절 사유, 열람등 조치를 위한 비용 부담 근거 등을 정하고 있음.

○ 영상정보의 특성상 촬영된 영상 내에 영상정보주체 외에도 다른 영상정보주체가 포함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열람등의 요구를 받을 때 열람등 요구자를 확인할 필요성은 인정됨.

○ 또한, 안 제3항은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영상정보주체등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33) 취소소송 등의 원고적격 판단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란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 등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이 가지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누13700 판결).

즉시 열람등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에는 열람등에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열람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인데, 촬영 이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 파악이 곤란하여 영상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신속한 사실 확인을 통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열람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열람할 수 있게 하려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생각됨.

- 다만, 안 제23조제1항은 영상정보주체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자가 열람등 요구를 받은 경우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열람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는 영상정보주체가 아닌 자의 요구에 대하여도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영상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는 조치 의무를 부과되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요구에 대하여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재량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행위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안 제24조는 영상정보주체등의 요구에 따라 열람등의 조치를 할 경우 필요한 기술적 조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열람등을 요구한 자 외의 타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이하 “비식별

조치”라 함)를 하도록 규정하는바, 열람등으로 인한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임.

- 다만, 이러한 비식별조치가 해당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가명처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익명처리’를 의미하는 것인지³⁴⁾ 문언상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4) ‘가명처리’란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익명처리’란 다른 정보가 있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의미함.

카. 손해배상책임 및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제정안은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영상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면서 그 입증책임을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고의·중과실로 개인영상정보가 분실·훼손되는 경우로서 영상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여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규정하며, 개인영상정보가 분실·훼손된 경우 등에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5조 및 제26조).

제 정 안
제25조(손해배상책임) ① 영상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으면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영상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영상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영상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제26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영상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이 조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 제정안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훼손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영상정보주체가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적 특성을 감안하여 손해발생의 입증책임을 영상정보주체에서 개인영상정보처리자로 전환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주체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임.

- 다만, 해당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및 제40조³⁵⁾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제정안에서는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5)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타. 보칙

□ 제정안의 제8장 보칙에서는 금지행위(안 제27조), 비밀유지 등(안 제28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안 제29조), 시정조치 등(안 제30조), 결과의 공표(안 제31조), 연차 보고(안 제32조), 권한 등의 위임·위탁(안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안 제34조)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7조(금지행위)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수집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 또는 그로부터 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이용, 훼손, 변경, 위조, 유출하거나 멸실되게 하는 행위 4.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한 개인영상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해당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제28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2.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제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하는 업무 3. 제3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업무 제29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영상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영상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자료 등을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 반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시정조치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개인영상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1. 개인영상정보 침해 행위의 중지
2. 개인영상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1조(결과의 공표) ① 보호위원회는 제30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및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연차보고) ① 보호위원회는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용 현황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용 및 관리 현황
2. 관제시설의 운영현황
3. 영상정보주체의 권리침해 및 그 구제현황
4.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결과
5. 개인영상정보 보호시책의 추진현황 및 실적
6. 개인영상정보 관련 해외의 입법 및 정책 동향

7.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용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시책에 관하여 공개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

제3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전문기관은 위임받은 권한의 행사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4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보호위원회가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제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비밀유지의무 등

□ 제정안은 개인영상정보 관련 업무 종사자(전직 포함)의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규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
제60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의8 및 제7조의9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2. 제28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전문기관의 업무 3.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업무 4. 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5.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	제28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2.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제시설에서 <u>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하는 업무</u> 3. 제3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업무

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6. 제40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 쟁조정 업무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3. <u>제60조를 위반하여</u> 직무상 알게 된 비 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제35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u>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4. <u>제28조를 위반하여</u>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 이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정보주체의 예측하지 못한 피
해 발생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제정안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과
달리 “공공기관 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업무”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60조)과 별도로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조문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시정조치 등(안 제30조)

□ 제정안은 일정한 경우 보호위원회가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 등은 소속 기관 등이 이 법 위반 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등이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보호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즉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 집행력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처벌 위주 집행보다는 시정명령 또는 권고 중심의 집행을 통해 이 법 규정이 사회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안은 시정조치 요건을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비해 강화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영상정보와 그 외 개인정보에 대한 시정조치 발동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일하게 이 법을 위반한 경우 그 외의 추가적인 요건 없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
제64조(시정조치 등) ① 보호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시정조치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개인영상정보가 침

1.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2.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1. 개인영상정보 침해 행위의 중지 2. 개인영상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	---

(3) 기타

- 안 제27조,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이미
규율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거나 준용하는 방
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파. 벌칙 등

- 안 제9장 벌칙에서는 벌칙과 양벌규정, 몰수·추징 및 과태료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안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 정 안
제3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 제20조 또는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 또는 그로부터 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 또는 그로부터 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7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이용, 훼손, 변경, 위조, 유출하거나 멸실되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그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한 자 2. 제27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수집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7조제4호를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한 개인영상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해당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 또는 제1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시킨 자
2. 제23조를 위반하여 정정, 처리의 전부·일부 정지 또는 삭제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영상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개인영상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 제정안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수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하나,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임.

○ 먼저, 제정안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한 개인영상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 및 제71조제8호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바, 유사한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처벌수준이 상이하므로 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 무 등) ①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제27조(금지행위)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수집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 또는 그로부터 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이용, 훼손, 변경, 위조, 유출하거나 멸실되게 하는 행위 4.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한 개인영상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해당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8. <u>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u>	제35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3. <u>제27조제4호를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한 개인영상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해당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한 자</u>

○ 다음으로, 안 제35조제3항제1호는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시킨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재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과거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등에 대하여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인에 대한 형벌 중심의 제재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23년 2월 과징금 제재로 변경된 바 있음³⁶⁾.

○ 마지막으로, 제정안은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은 해당 위반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바, 제재 수준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6)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개정

하. 부칙

- 제정안 부칙은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법률 제정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보안인증을 받은 네트워크카메라가 최초로 설치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영상정보 처리 현황 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개인영상정보처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현황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관제시설 자체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당 관제시설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영상정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운용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처리된 개인영상정보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운용되거나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및 제7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 및 제2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용·관리 및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보호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다만, 부칙 제1조(시행일) 단서는 네트워크카메라의 보안인증 관련 개정규정을 ‘보안인증을 받은 네트워크카메라가 최초로 설치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규정할 경우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네트워크카메라 설치에 대한 시행시점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다만,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네트워크카메라를 최초로 설치하거나 교체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등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부칙 제6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중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인데, 제정안 입법 시 이 외 법률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하는 규정들을 일괄개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08

【참고자료1】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해외 법·제도 동향

◇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규제하는 제도가 법률, 훈령, 조례, 가이드라인 등 국가별 다양한 형태*로 존재

* (훈령·조례 등) EU·영국·독일·미국·일본, (별도 법) 스웨덴·벨기에·호주

◆ E U

○ EU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근거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CCTV 등 영상기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원칙 제시**

* 영상기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3/2019 on processing of personal data through video devices, 2020.1.29. 개정)

○ 촬영 목적 명확화, 목적 외 촬영 금지, 촬영 사실 표시, 접근 제한, 삭제요구권 보장, 민감정보* 수집 목적 금지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 인종적 기원, 종교적·정치적 견해, 노동조합원, 성적 취향 등

- 특히, 근로공간에서 업무 양과 질을 직접 감시하기 위한 목적은 금지

◆ 영 국

○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CCTV 관련 훈령*** 제정·운영

* 감시카메라 설치 규정(The Surveillance Camera Code of Practice, 2013)
감시카메라와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정보보호 규정(Data Protection Code of Practice for Surveillance Camera and Personal Information, 2014)

○ 이동형 등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규율**하며 구체적 요건 제시

- 설치·운영 목적 명확화, 목적 외 촬영 금지 등 기본원칙 외에도 안내판* 및 안내표시**에 대한 기준, 관제요원 교육*** 등 명시

* CCTV 안내판은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고 운영 목적과 담당자 연락처 기재

** 드론의 경우 운영자(조정자) 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시된 옷 착용

*** 공공기관인 SIA(Security Industry Authority)가 관제요원 교육 자격 제도 운영

◆ 독 일

- 연방정보보호법 일부 규정에서 기본원칙을 규율하고 각 개별법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 CCTV 운영 요건을 조금씩 다르게 규율
- 연방정보보호법에서는 설치 목적 제한*, 감시상황에 대한 표시, 목적 외 이용 제한**, 목적 달성시 삭제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
 - * 공공기관의 소관업무 수행, 주거권 실현, 정당한 이익 실현(이익형량 필요)
 - ** 공공의 안전과 범죄수사 목적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목적 외 이용 허용
- 기타 경찰법(공개감시), 형사소송법(피의자 대상 비밀감시 허용), 집회법(중대한 위험 입증시) 등은 각각의 입법 목적에 따라 별도의 요건 규정

◆ 미 국

-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비디오감시를 금지하는 연방법(Video Voyeurism Prevention Act)은 있으나, 개인정보 및 CCTV 전반에 관한 연방법은 없음
- '07년 국토안보부 보고서*를 통해 CCTV 규제에 대한 기본원칙 제시
 - * CCTV 합리적 규제방안에 대한 보고서(CCTV : Developing Privacy Best Practices ; Report on the DHS Privacy Office Public Workshop, 2007)
- 동 보고서는 CCTV가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 평가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인종·성별 평등권 등 헌법적 가치를 반영해야 함을 제시
- CCTV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정의, 정보주체의 접근권 보장, 안전성 확보, 카메라 위치 제한, 관제요원에 대한 교육 등 명시
- 미국 보안산업협회(Security Industry Association)는 '공공안전을 위한 CCTV와 지역사회 경찰 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
- 공공장소 설치시에는 범죄예방·교통단속·사유지 보호 등 목적 제한, 공공기관이 CCTV 운영·변경시에는 사전에 지역사회와 적극 협의, 촬영된 영상은 적정 기한 내 삭제 등

◆ 일 본

-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가이드라인, 지자체 조례*, 행정지도****로 규율
 - * 스기나미구, 이치카와시, 미타카시, 세타가야 등에서는 지자체 조례 제정·시행
 - ** 금융기관은 경찰청 행정지도에 따라 방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범죄발생시 활용
- 가이드라인*에서 CCTV 영상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화
 - * 카메라 영상 활용 가이드북(2018.3월, 총무성·경제산업성 합동)
-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CCTV는 설치주체(지자체, 경찰 등)와 목적(방법, 교통통제, 재난감시 등)을 명확히 밝히고,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고지
 -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제3자 제공 금지, 제공시 관련 내용** 기록
 - * 본인 동의, 법령에 규정, 생명·신체·재산상 위험(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 ** 제3자 제공시 제공 목적·일시·대상·이유, 제공된 영상의 내용 등 기록

◆ 스웨덴

- **별도 법(카메라감시법, Kameraövervakningslag)**을 통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전반을 규율
- 설치 장소별 특징에 따른 **허가제 또는 신고제 운영**, 탈의실 등에는 설치 금지, 안내판 설치, 목적 외 이용 금지, 접근권한 제한, **최대 보관기관(2개월)** 등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
 - 허가 또는 신고는 카메라 설치 지역 관청에서 접수 및 처리

허가 대상	신고 대상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용
▶ 일반인이 접근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카메라 설치시 (교통안전, 도로 및 교통단속, 군사훈련, 비상사태 발생시, 실종자 수색 등은 제외)	▶ 은행 시설, 마케팅 시설, 우체국, 현금인출기, 주차장 등	▶ 전철이나 전철역 감시

◆ 벨기에

- **별도 법**(감시카메라 설치 및 사용 규제법, Loi réglant l'installation et l'utilisation de caméras de surveillance)을 통해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전반을 규율
- 장소별 접근 가능성을 고려한 사전 **신고제 운영**, 이용 목적을 엄격히 제한, **입구에 카메라 표시 도면 부착**, 이동형 기기 허용, 민감정보 수집 금지, **최대 보관기간(1개월)** 등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
 - * 일반인 접근 가능 장소 수집 영상은 범죄 수사, 공공질서 유지 등 목적으로만 이용

구분	일반인 접근 가능한 공개된 장소 설치시 (도로, 공원 등)	일반인 접근 가능한 닫힌 장소에 설치시 (영화관, 도서관 등)	일반인 접근 불가능한 닫힌 장소에 설치시 (사무실 등)
신고 관청	시의회 (시의회가 경찰에 통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경찰 책임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경찰 책임자

◆ 호 주

- **감시장비법**(Surveillance Devices Act, 2007)에서 광학식 감시장치(CCTV, 바디캠 등), 감청장치, 기타 추적장치에 대한 사용 규제
- 경찰의 범죄 수사나 영장 집행 등과 관련한 CCTV 등 감시장비 사용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
 - 영장 또는 본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는 감시는 금지
 - 경찰이 제복 착용 또는 사용 통지하면 임무 수행 중 바디캠 사용 가능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참고자료2】 CCTV 관련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개별 법령 현황

⇒ 법률 29개, 시행령 22개, 부령 34개 등 총 85개('24.12월 기준)

○ 법률 : 29개

관련법령	설치 목적/장소	의무화 여부	주요내용
공직선거법	투표함 보관장소	의무	우편 및 사전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인 폭력 방지 / 인권침해 우려 지점	임의	국가 등은 폭력 등 우려가 있는 지점에 CCTV 설치 가능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범죄 예방 및 보안 확보 / 항만시설	의무	범죄 예방 및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유·관리·운영하는 항만시설에 CCTV 설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자살방지 등 / 수용시설	임의	CCTV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수용자 계호 가능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 감시 설비 / 사업장	임의	CCTV 등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시 노사협의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노인학대 방지 및 수급자 안전 / 장기요양기관	의무	공공거실, 침실, 현관, 물리치료실, 식당, 승강기 등에 1대 이상 설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구역 범죄예방 / 정비구역	의무	정비구역내 CCTV 설치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작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 / 도시공원	의무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지점에 CCTV 설치
도시철도법	교통사고 상황 파악 등 / 도시철도차량	의무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에 CCTV 설치

관련법령	설치 목적/장소	의무화 여부	주요내용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방지 등 / 동물보호센터 등	의무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 도축장, 동물 생산·수입·판매 ·장묘 사업장에 CCTV 설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행자 보호 / 보행자길	임의	국가, 지자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무	우범지역이나 범죄 발생 위험 높은 지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보호 / 자해, 자살우려 장소	임의	자해, 자살우려 등이 있는 장소에 전자영상장비로 감호 가능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범죄예방 / 사업시행구역	의무	사업시행구역내 CCTV 설치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작성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사고 방지 / 사격장	의무	사격장 주요지점에 CCTV 설치
아동복지법	아동보호 / 아동보호구역	임의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은 CCTV 설치 가능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교통사고 상황 파악 등 / 사업용 자동차	의무	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상황 파악 등을 위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영유아보육법	아동학대 방지 등 / 어린이집	의무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보호자 열람 가능
유료도로법	통행료 부과수납	임의	유료도로 통과 차량의 통행료 부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환자의 이송상황 및 처치내용 파악 등 / 구급차, 격리병상	의무	응급환자의 이송 상황과 이송 중 응급처치 내용 파악을 위해 CCTV 설치
의료법	의료분쟁 대응 등 / 수술실	의무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 의무화('23.9월 시행)

관련법령	설치 목적/장소	의무화 여부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 재난발생 가능 장소	의무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발생 방지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하여야 함
철도안전법	교통사고 상황 파악 등 / 철도차량	임의	철도운영자는 교통사고 상황 파악 등을 위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초중등교육법	학생 안전 / 학교	의무	학교장은 CCTV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함
출입국관리법	피보호자 보호 및 시설안전 / 필요한 범위	임의	출입국관서의 장은 CCTV 등 필요한 시설 설치 가능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신변안전조치 / 피해자 주거지	임의	신변안전조치에 필요시 대상자 주거에 대한 CCTV 설치
폐기물관리법	화재예방 등 /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	의무	화재예방을 위해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CCTV 설치·관리
학교체육진흥법	성폭력, 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 / 학교 체육시설	임의	학생에 대한 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지점에 CCTV 설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 내외	임의	학교폭력 예방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학교 내외에 설치 및 통합관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자살방지 등 / 수용시설	임의	CCTV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수용자 계호 가능

○ 시행령 : 22개

관련법령	설치 목적/장소	의무화 여부	주요내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신변안전조치 / 피해자 주거지	임의	피해자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로 CCTV 설치 가능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사고 예방 / 공사장	의무	공사장 내 CCTV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경찰수사규칙	신변안전조치 / 피해자 주거지	임의	피해자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로 CCTV 설치 가능
고등교육법 시행령	인권센터 내 안전 보장 / 인권센터	의무	인권센터 내 안전 보장을 위해 CCTV 설치
공직선거관리규칙	투표함의 보관장소	의무	투표함의 보관상황 전체를 녹화 기록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체육시설 내 폭력예방 / 폭력우려 장소	임의	CCTV 설치가 필요한 폭력 우려 장소 규정(훈련장, 훈련시설 등)
도로법 시행령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 / 도로	임의	도로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CCTV 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용자 안전 / 도시공원 및 녹지	의무	CCTV 설치시 매년 주민과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반영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 안전 / 도시철도 차량	의무	CCTV 설치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안내판 설치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 / 보호센터, 보호시설, 도축장 등	의무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 도축장 등에 CCTV 설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담당자 안전 / 민원실	의무	민원담당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CCTV 설치 등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사고 예방 / 사격장	의무	사격장 설치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해야 함

관련법령	설치 목적/장소	의무화 여부	주요내용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용객 안전 / 자연휴양림시설	의무	이용객 안전을 위해 자연휴양림시설 내 안전시설용 CCTV 설치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 / 아동보호구역	의무	국가 및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보호구역에 CCTV 설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운행기록, 사고예방, 범죄예방 / 여객자동차	의무	운송사업자는 CCTV 안내판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마련
유료도로법 시행령	통행료 부과, 수납 / 유료도로	임의	통행료 부과, 수납 등을 위한 차량영상인식시스템 구축, 운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보안 및 방범 / 공동주택단지	의무	공동주택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 목적의 CCTV를 설치하여야 함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시행령	시설관리 / 지진해일 관측소	임의	지진해일의 상시모니터링을 위해 필요시 CCTV 설치 가능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 / 철도차량	의무	CCTV 설치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안내판 설치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도한 사행행위 예방 / 카지노 호텔 내외부	의무	사행행위 예방 등을 위해 CCTV 설치 등 요건 부여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학교 체육시설 내 폭력예방 / 폭력우려 장소	임의	CCTV 설치가 필요한 폭력우려 장소 규정(훈련장, 훈련시설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폭력 예방 / 학교	임의	학교 CCTV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자체에서 통합하여 관제 가능

○ 부령 : 34개

관련법령	설치 목적/장소	의무화 여부	주요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가축 전염병 대응 / 농장 내부 (닭·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 한정)	의무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 파악을 위해 CCTV 설치 및 30일 이상 보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작업 확인 / 타워크레인	임의	타워크레인 제작사 등은 작업 확인을 위한 영상기록장치 설치 가능
검역법 시행규칙	검역 수행 등 / 검역소	의무	검역 업무 수행을 위해 검역소 내 CCTV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방법 및 시설안전 / 공동주택	임의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설치 및 관리 기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공중위생 / 목욕장 (목욕실, 탈의실 등 제외)	임의	목욕실, 탈의실 등 제외하고 CCTV 설치 가능하며 이 경우 안내판 게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설 안전 등 / 야영장	의무	야영장 입구를 포함한 야영장 내 주요지점에 CCTV 설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설안전 / 대기시설, 항만시설 울타리 등	의무	국제여객선터미널의 대기시설, 울타리 등에 CCTV 설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용자 안전관리 / 교정시설	임의	CCTV는 군 교정시설의 벽둘레, 감시대, 울타리 등 계호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시설 안전 등 / 교차로 및 정거장	의무	주요 교차로와 정거장에 CCTV 설치하여 관제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관련법령	설치 목적/장소	의무화 여부	주요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안전관리, 화재예방 / 노인장기요양시설	의무	노인장기 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의 관리 기준 및 열람 절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설 관리 / 시설내부 (플레이스택, 코크스 관련 시설)	의무	배출가스연소탑 내 자동점화시설 모니터링을 위해 CCTV 설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 보호 / 영업장	의무	장묘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22.6월 시행)
		임의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전시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달장애인 치료 등 / 관찰시설	의무	발달장애인의 보호와 치료를 위해 관찰시설 내 CCTV 설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행자 보호 / 보행자길	의무	CCTV 설치가 의무화되는 장소와 설치 방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소년 감호 / 보호시설	의무	복도, 생활지도실 등 보호소년 등의 감호에 필요한 시설에 CCTV 설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설 감시 / 실험실 및 보관시설	의무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은 시설 감시용 CCTV 설치
수도법 시행규칙	시설 보안 / 상수도시설	의무	상수도시설에 대한 외부침투를 대비하기 위해 시설 보안용 CCTV 설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어린이 안전 / 어린이집	의무	어린이집 CCTV 설치 기준 및 열람 절차 등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분쟁 대응 등 / 수술실		수술실 CCTV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외국인 보호규칙	보호시설 안전 / 외국인보호시설	임의	CCTV를 포함하는 안전대책 확보

관련법령	설치 목적/장소	의무화 여부	주요내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생태통로 조사 / 조사지역	임의	생태통로 조사를 위해 조사지역에 계절별 1개월 이상 CCTV 설치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자전거 도난 예방 / 자전거 이용시설	임의	자전거 도난 예방 을 위한 CCTV 설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출입 관리 등 / 자유무역지역	의무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 관리를 위해 CCTV 설치, 90일간 관리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시설 안전 및 관리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공간 내부	임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공간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또는 투명창 설치
주차장법 시행규칙	방범설비 / 주차장	의무	CCTV를 포함하는 주차장내 방범설비 설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방범, 화재예방 등 / 공동주택단지	의무	공동주택단지의 승강기, 놀이터, 출입구 등에 CCTV 설치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민간 데이터센터 시설 안전 / 전산실	의무	민간 데이터센터 시설 안전을 위해 CCTV 설치
지하공공보도시 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설관리 / 지하공동보도시설	의무	중앙방재실은 CCTV 설비를 갖춰야 함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 이용자 안전 / 철도 내부	의무	CCTV 영상은 3일 이상 보관, 단 사고 등으로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삭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설치 목적/장소	의무화 여부	주요내용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법·보안 / 피난안전구역	의무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테러 등의 감시와 방법·보안을 위해 CCTV 설치
출국대기실 운영규칙	출국대기실 이용자 안전 / 출국대기실	임의	출입국관리소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대책에 필요한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화재예방 / 폐기물 처리장	의무	폐기물 화재예방 조치로서 CCTV를 설치하고 60일간 저장 보관
해양경찰 수사규칙	신변안전조치 / 피해자 주거지	임의	신변안전조치에 필요시 대상자 주거에 대한 CCTV 설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살방지 등 / 수용시설	임의	CCTV는 군 교정시설의 벽돌레, 감시대, 울타리 등 계호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